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2096 판결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

##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9908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가단2096 판결

##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변론종결 2021. 9. 8.

판결선고 2021. 10. 27.

##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하남시 E 전 2704㎡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23. 접수 제80154호로 마친, 피고 D은 같은 법원 2020. 12. 23. 접수 제8015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하남시 E 전 27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80154호로 2020.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80155호로 2020.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2. 16. 이 법원 2021카단64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21. 2. 22. 피고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등기서류가 위조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오히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교부·발행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대금이 지급된 후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범선윤